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 | |
|--------|------|
| 선 람 | 기관의장 |
| | |

제 726호 2009. 11. 12.(목)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2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 ----- 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260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 19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 - 12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 상위 법령인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근거로 이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목적
- 장애인 체육단체의 구성 및 구성방법과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장애인우수선수 육성에 따른 선수임면에 관한 사항, 선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 선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근거 마련
-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관내 선수단 예산 지원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413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체육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체육 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설립인가(등록)증 사본
2. 법인(단체)정관
3. 법인(단체) 재산목록(재산증빙서류 첨부)
4. 사업계획서(운영비부담 및 인력확보계획 포함)
5. 대표자 사용인감
6.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사업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장애인체육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장애인 우수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제4조(우수선수 선발) 제3조제2항의 장애인 우수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구청장이 선발하여 임용한다.

1. 전국대회 규모이상의 경기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선수 또는 국가대표급 실력을 갖춘 선수
2. 장애인 관련 경기종목별 협회 및 연맹 등에 등록된 자
3. 기타 장애인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제5조(장애인선수 추천)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수를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이력서
2.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6조(선수 해임)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선발된 선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선수생활을 할 수 없을 때
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때
3.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선수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
4. 품위손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선수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7조(선수의 관리 및 훈련) ① 선수의 관리 및 훈련은 장애인체육 단체(이하 “선수관리단체” 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선수관리단체에서 선수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 또는 기타 관련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선수 및 선수관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선수 훈련 상황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수 및 선수관리단체는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일정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훈련 및 대회 참가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선수의 복무) ① 선수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되, 훈련시간 등을 감안하여 선수관리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연간 20일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가 및 경조사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와 제2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

이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개월 이내
2.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2개월 이내
3.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
- ④ 선수가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고, 휴가일수는 별표 1과 같다.
- ⑤ 선수는 휴가 등을 실시하기 전 복무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 기재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실시한다.
- ⑥ 선수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9조(선수 경비 지급) ① 선수의 훈련 지원 및 선전 장려를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훈련복 및 장비, 대회출전 선전장려금 및 입상자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훈련복 및 장비의 지급 신청은 선수 및 선수관리단체에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대회출전 선전장려금 및 입상자보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료보상) ①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선수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운동경기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선수의 발굴 및 선발에 관한 사항
2. 선수의 임용, 해임에 관한 사항
3. 기타 선수의 육성 및 시책개발 등 선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보수 등) ①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연봉제로 한다. 단,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한 것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는 2년 이상 장기계약 할 수 있다.

- ② 월 보수는 연봉액 중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의 12분의1로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연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연봉은 별표 3의 점수산정 기준표에 따라 정한다.
2. 등급별 연봉액에 대한 등급결정은 별표 4를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할 수 있다.
3. 선수가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여 4회 이상 대회에 출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도 성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제13조(퇴직금) ① 선수가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공무원연금법」 제48조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퇴직자의 퇴직금은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되어야 한다.

③ 퇴직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①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 체육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선수단에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단체 구성 신청서

| | | |
|---|---------|--|
| 단 체 명 칭 | | |
| 신 청 자 | 법인(단체)명 | |
| | 주 소 | |
| | 성명(대표자) | |
| 법인(단체) | 설립근거 | |
| 법인(단체) | 설립목적 | |
| 단 체 운 영 방 법 | | |
| 기 타 사 항 | | |
| <p>「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주 소 :</p> <p style="text-align: center;">법인(단체) :</p> <p style="text-align: center;">대 표 자 :</p> <p>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p> | | |
|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단체)설립인가(등록)증 사본 2. 법인(단체)정관 3. 법인(단체) 재산목록(재산증빙서류 첨부) 4. 사업계획서(운영비부담 및 인력확보계획 포함) 5. 대표자 사용인감 6.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사업실적 | | |

(별지 제2호서식)

추천서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동 번지

성 명 : (한 자 :)

주민등록번호 :

상기자는 우수장애인 선수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이므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우수 선수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장)

직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우수 선수 훈련일지

| | | | |
|-----|------------|--------------|--------|
| 담당자 | 체육진흥 담당 | 문화관광체육 과장 | 결 재 |
| | | | |

년 월 일

작성자 : (인)

| 참석 현황 | 참석대상 | 참석인원 | 불참자 | 불참자내역 | | | | |
|----------|------|------|-----|-------|----|----|----|----|
| | | | | 계 | 교육 | 연가 | 병가 | 기타 |
| | | | | | | | | |
| 훈련 내용 | 시 간 | 훈련내용 | | 장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이 사항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퇴 직 금 청 구 서

| | | | |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 퇴 직 년 월 일 | |
| 퇴직당시 소속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관광체육과) | | | 퇴직당시직명 | |
| 첨 부 : 사직서 1부 | | | | | |
| 년 월 일 | | | | | |
| 청구인 : (인) | | | | | |
| | | | | | |
|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 | | | | |
| 재직기간 : | | | | | |
| 소 속 | 직 명 | 근 무 기 간 | | 발 령 청 | 확인(업무담당) |
| | | . . . ~ . . . (총근무일수 : 일) | | 인천광역시 서구청 | |
| ○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 | | | | |
| ○ 퇴직전 : 원 월평균 보수 | | ○ 퇴직금 : 원 산출액 | | ○ 퇴직금 전환금 : 원 납부액 | |

| | | | | | | |
|---|-----|------------|--------------|--------------|------|-----|
| 결 | 담당자 | 체육진흥 담당 | 문화관광체육 과장 | 주민생활지원 국장 | 부구청장 | 구청장 |
| 재 | | | 전 결 | | | |

※ 비고 : 청구인은 점선 윗부분만 직접 기입한다.

(별지 제7호서식)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

| 접수번호 | 소 속 | 직 위 | 성 명 | 퇴직일자 | 접수일자 | 비 고 |
|------|-----|-----|-----|------|------|-----|
| | | | | | | |

[별표 1]

특 별 휴 가 일 수

| 구 분 | 휴가일수 | | |
|--------|------|------|------|
| | 종합우승 | 단체1위 | 개인1위 |
| 전국규모대회 | 3 | 2 | 1 |
| 전국체전 | 7 | 4 | 3 |
| 세계대회 | 10 | 7 | 5 |

[별표 2]

대회출전 선전 장려금 지급액

(단위 : 원)

| 구 분 | 국 제 대 회 | 전국(체전)규모대회 | 비 고 |
|-----|-------------|------------|-----|
| 금 액 | 선수당 500,000 | 선수당 80,000 | |

※ 국제대회 : 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각 종목별 공인된 국제대회 등)

대회출전 입상자 보상금 지급액

(단위 : 원)

| 구 분 | 1위 | 2위 | 3위 | 비고 |
|---------|---------|---------|---------|----|
| 국제대회 | 500,000 | 400,000 | 300,000 | |
| 전국장애인체전 | 300,000 | 200,000 | 150,000 | |
| 전국규모대회 | 200,000 | 150,000 | 100,000 | |

[별표 3]

점수산정기준표

| 구분 | 배점 | 기 준 | 비고 |
|-----|----|---|----|
| 경 력 | 10 | ○ 선수단 근무경력(우리구 입단) - 3년이상 : 10 - 2년이상 3년미만 : 8 - 1년이상 2년미만 : 6 - 1년미만 : 4 | |
| 경기력 | 70 | ○ 최근 1년간 각종대회 입상경력 - 국제대회 단체·개인전 : 1위 40, 2위 30, 3위 20 - 전국체전 단체·개인전 : 1위 30, 2위 20, 3위 15 - 전국규모 단체·개인전 : 1위 18, 2위 15, 3위 13 | |
| 복무등 | 20 | ○ 복무상황 등 - 근무태도 : 10점(탁월10,우수9,보통8,미흡7,부진6) - 기여도 : 5점(탁월5,우수4,보통3,미흡2,부진1) - 장래성 : 5점(탁월5,우수4,보통3,미흡2,부진1) | |

[별표 4]

등급별 급여 지급액 기준표

(단위 : 원)

| 구 분 | A(90점이상) | B(80점이상) | C(80점미만) | 비 고 |
|-----|----------------------------|-----------------------------|-----------------------------|-----|
| 선 수 | 20,400,000 (월1,530,000) | 18,000,000 (월 1,350,000) | 16,800,000 (월 1,260,000) | |

※ 단,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는A등급을 적용하여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 1260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연희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0 0 9 . 1 1 . 1 2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연희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성 명 : 인천광역시장 (수탁자:동부공원사업소장)
3. 사 업 시 행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
4. 사 업 개 요 : 도시자연공원 조성(시설물 등 포함)
5. 열 략 기 간 : 2009. 11.12. ~ 2009. 11.26.
6. 열 략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 032-560-4805)
7. 의견서 제출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8. 대 상 물 건 조 서 : “붙임” 참조 (원본: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비치)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녹지경관과(☎032-560-4805),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032-440-5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